

신속한 피해회복의 시작

#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



## 지원대상

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'21.12.15일\* 이전 개업

소상공인·소기업(이하 소상공인) 약 320만 개사에 지원

\*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(12.16) 이전일 창업자까지 지급

## 영업시간 제한

'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(1.2.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)

\* 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·공연장, PC방, 파티룸 등

## 일반 소상공인

'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(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)

## 지급시기

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
### 1차 지급

12월 27일~

|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

### 2차 지급

1월 6일~

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

### 3차 지급

1월 중

|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

### 4차 지급

1월 중

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
(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)

### 5차 지급

2월 초

|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
(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)

### 이의 신청

2월 말

|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

\*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(별도 안내 예정)

## 신청방법

①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표에게는 12월 27일(월) 0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

\*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,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, 2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

② 일반 소상공인 대상 2차 지급, '22년 1월 6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, 별도 안내 예정

③ 신규창업 등 사유로 기존 DB에 없거나,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(공동대표 사업체, 1인 다수사업체 운영,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) 1월 중순 별도 안내 통해 지급 예정

신청  [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](http://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) | 콜센터  1533-0100

\*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빠르면 신청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※ 세부 지원기준,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(www.mss.go.kr)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 확인